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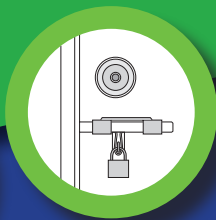
Guide Book



물건 적치 금지



폐쇄/잠금 금지



비상구 닫기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Guide Book

Contents

01

알기쉬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현황 및 추이 / 4
-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 6
- 제3장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 8
-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 12
- 제5장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 14
- 제6장 소방안전교육 / 17
- 제7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방염성적서 교부 절차 / 18
- 제8장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20
- 제9장 화재배상책임보험 / 21
- 제10장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 22

02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제1장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 26
- 제2장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36
- 제3장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 39

03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 제1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 44
- 제2장 만화로 보는 화재 예방 / 48
- 제3장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50

0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제1장 응급처치의 개요 / 54
- 제2장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사용 / 55

첨부

화재사례로 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 / 59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PART
01

알기쉬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현황 및 추이
-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 제3장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 제5장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 제6장 소방안전교육
- 제7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방염성적서 교부 절차
- 제8장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제9장 화재배상책임보험
- 제10장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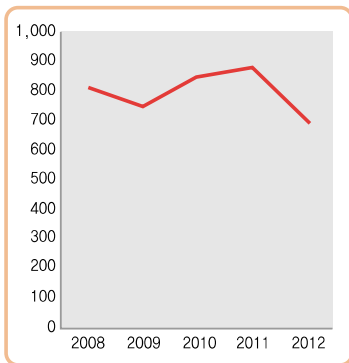
■ 화재위험 분석

-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전체화재 225,934건 중 3,940건으로 1.7%를 차지한 반면, 인명피해점유율은 3.1%로 약 1.8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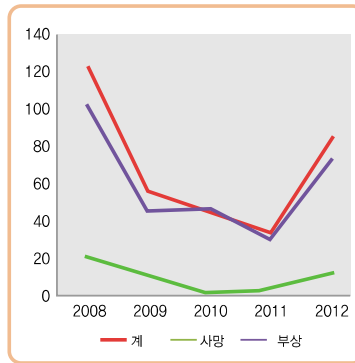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5년 합계	225,934	11,133	221,994	10,790	3,940	340
	100%	100%	98.3%	96.9%	1.7%	3.1%
'12년	43,247	2,222	42,558	2,137	689	85
'11년	43,875	1,862	43,001	1,829	874	33
'10년	41,863	1,892	41,026	1,847	837	45
'09년	47,318	2,441	46,577	2,385	741	56
'08년	49,631	2,716	48,832	2,592	79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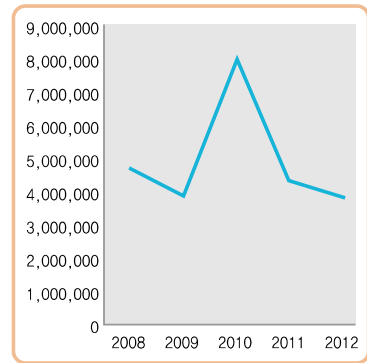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인명·재산 피해 분석



[연도별 화재건수]



[연도별 인명피해]



[연도별 재산피해]

- (화재발생/인명피해)

연평균 화재건수 788건/인명피해 68명(사망 9, 부상 59)

- (업종별 화재발생) ① 일반음식점 ② 노래연습장 ③ 유흥주점 ④ 찜질방 순
- (업종별 인명피해) ① 유흥주점 ② 고시원 ③ 노래연습장 ④ 찜질방 순
- (화재발생 요인) ① 전기적요인 ② 부주의 ③ 기계적결함 순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원]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일반음식점	809	35	5	30	5,508,984
휴게음식점	47	1	0	1	353,604
단란주점	279	20	5	15	1,666,450
유흥주점	476	87	22	65	3,837,364
비디오물감상실업	1	0	0	0	260
게임제공업	129	3	0	3	178,572
노래연습장업	733	45	0	45	3,490,195
복합유통제공업	0	0	0	0	0
찜질방	366	26	0	26	1,979,269
산후조리원	8	0	0	0	204,473
고시원	207	48	8	40	367,844
휴게텔	13	2	0	2	102,143
PC방	332	7	0	7	409,895
화상대화방	7	0	0	0	17,107
콜라텍	8	0	0	0	70,800
기타	525	66	5	61	6,719,664
합계	3,940	340	45	295	24,906,624

- 화재는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유흥주점, 고시원 및 노래연습장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칸막이를 이용한 다수의 구획된 실과 좁은 통로라는 공통적인 특징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이용업소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합 계	실 화							자연적 요인	방 화		미 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3,940	2,044	251	6	7	0	1,072	67	1	65	98	329

- 원인별로는 전기화재가 2,0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 요인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www.kfsa.or.kr

1.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

2. 다중이용업의 종류

업종		요건
단란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음
유흥주점영업		
복합 영상물 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실내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업		



업종		요건
휴게음식점영업		① 지하층 : 66m ² 이상 ② 지상층 : 2층 이상은 100m ² 이상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음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제외
학원		① 수용인원 300인 이상 (영업장 570m ² 이상) ② 수용인원 100~300인 미만인 아래 학원(영업장 190m ² ~570m ²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 면적의 합이 570m² 이상인 곳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① 일반목욕장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m ² 이상)으로 찜질의 시설이 있는 곳 ② 찜질방 : 모두 해당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 ① 안전시설등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②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④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장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과태료!

소화기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
자동확산 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① 대 상 : 고시원 · 산후조리원 · 지하층 · 무창층 · 실내권총사격장 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 103)

2)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수신기 : 영업장마다 별도 설치 ②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감지부 수신제어부	① 대 상 :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②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 감지부를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 • LNG : 감지부를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



3) 피난설비

<p>피난기구</p>		<p>① 대 상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발코니·부속실) ② 설치기준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 제외)</p>
<p>피난유도선</p>		<p>① 대 상 : 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비디오물 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업 ② 설치기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복도, 전기(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p>
<p>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p>		<p>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출입구,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p>
<p>휴대용 비상조명등</p>		<p>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 마다 1개씩</p>

2. 비상구

	<p>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영업장마다 설치(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 • 위치 -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장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 - 불가피한 경우 장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 •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 문의 열림방향 : 피난방향 • 문의 재질 :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p>
---	--

※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비상구 설치 세부기준

■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①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②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33m²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높이 100cm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비상구 및 주출입구를 불연재료 문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② 비상구 또는 주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면서 화재의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③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① 대 상 :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 · 산후조리업 · 고시원업
- ② 설치기준 : • 통로폭 : 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일 경우 150cm 이상)
• 구획된 실에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3번 이상 구부러질 수 없음



4. 창문



- ① 대 상 : 고시원업
- ② 설치기준 :
 - 각 층별 1개 이상 설치(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 열리는 구조
 -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복도 등에 설치

5. 그밖의 안전시설

<p>영상음향 차단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 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② 설치기준 : 화재시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 되도록 설치(수동 가능) <div style="background-color: #f9e79f;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수동차단장치 별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인이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 부착 • 영상음향차단기 작동으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div>
<p>누전차단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부하용량에 적절한 누전차단기 설치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출입문 → 방화문
 개구부 → 자동방화 댐퍼 설치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과태료 200만원

1. 실내장식물

[원칙]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예외] 합판·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10분의 5) 방염물품 설치 가능

2.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방염대상물품

- 채광용 커튼류(브라인드)
- 카펫
-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됨 /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



[커튼]



[블라인드]



[카펫]



[합판]



[스크린 골프장]



[암막]



[무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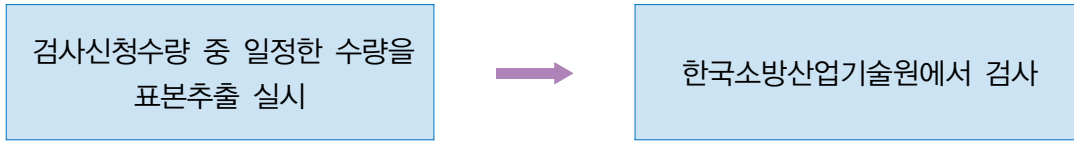
[소파]

[방염대상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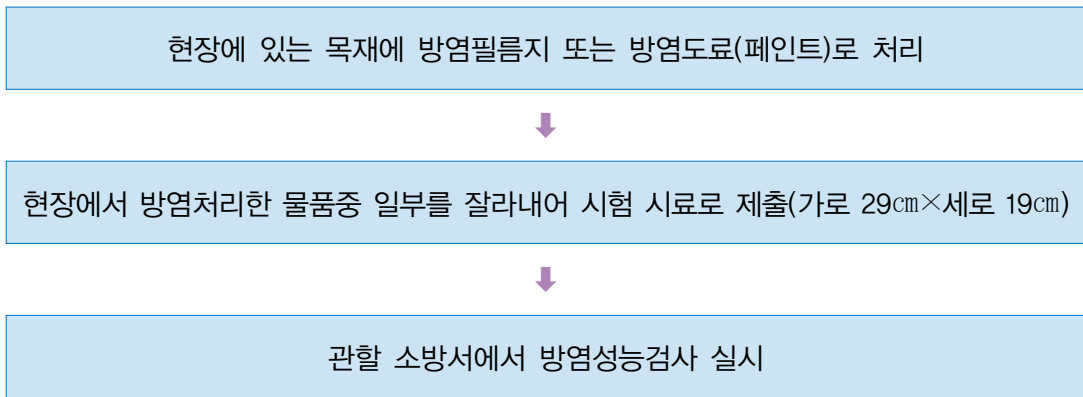


3.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검사

1) 제조공정 처리물품(선처리 물품) : 물품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2) 현장처리 물품(후처리 물품)



[방염물품에 부착되는 방염표지의 모양]

제조공정 방염 처리물품												
	카펫, 합판,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합성수지벽지류 등	커튼 등 섬유류 (내세탁성)	커튼 등 섬유류 (비 내세탁성)									
현장방염 처리물품		<table border="1"> <tr> <td>방염처리자</td> <td>○○방염</td> <td rowspan="4">○○소방서 (인)</td> </tr> <tr> <td>처리방법</td> <td>방염필름, 방염도료</td> </tr> <tr> <td>면적</td> <td>○○○m²</td> </tr> <tr> <td>방역성능 검사</td> <td>제2013-○○호 (2013년○월○일)</td> </tr> </table>		방염처리자	○○방염	○○소방서 (인)	처리방법	방염필름, 방염도료	면적	○○○m ²	방역성능 검사	제2013-○○호 (2013년○월○일)
방염처리자	○○방염	○○소방서 (인)										
처리방법	방염필름, 방염도료											
면적	○○○m ²											
방역성능 검사	제2013-○○호 (2013년○월○일)											
	[방염필름]	[방염 후처리 성능검사 합격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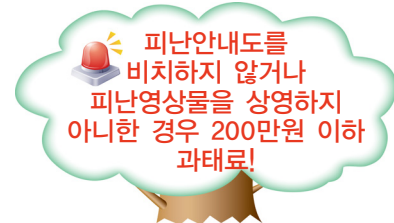
제5장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1. 피난안내도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비치



1) 비치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설치 제외 장소

-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m² 이하인 경우
-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2)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1) 크기 :
 - B4(257mm × 364mm) 이상
 - A3(297mm × 420mm) 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m² 이상인 경우
- (2)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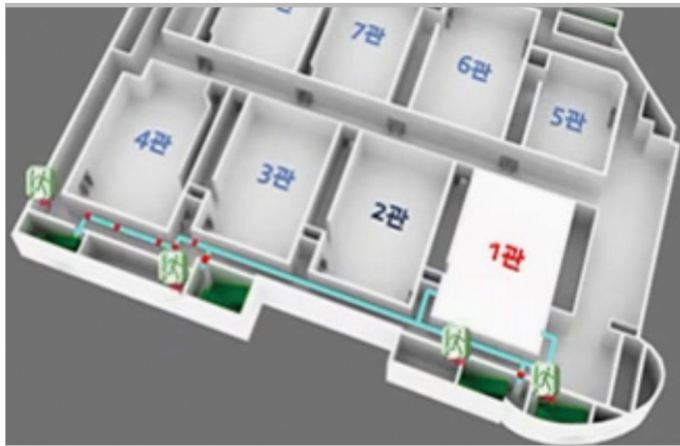
2.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대상

-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2) 노래연습장업
-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책상마다 피난안내도로 대체 가능)
- (5)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2) 상영시간 및 상영시기(時期)

-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화재 발생시

- 발신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대피시

- 자세를 낮춘다.
- 물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피난구를 통해 유도등을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예시]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 및 대처방법



제6장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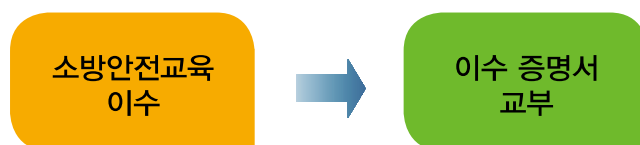
- 예외**
- ①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이내 받아야 한다.
 -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신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내

※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이수증명서 훼손시 재교부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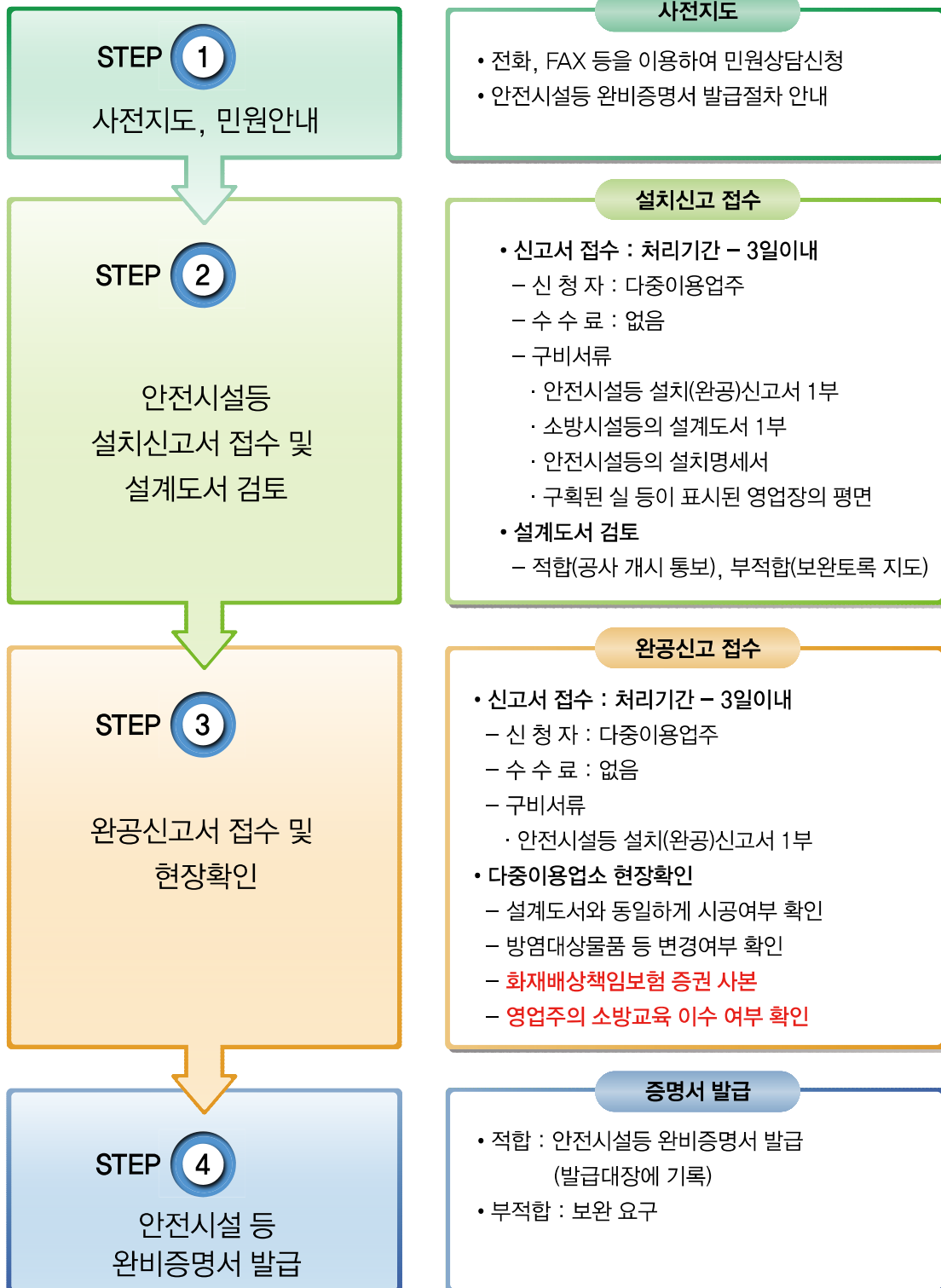


제7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방염성적서 교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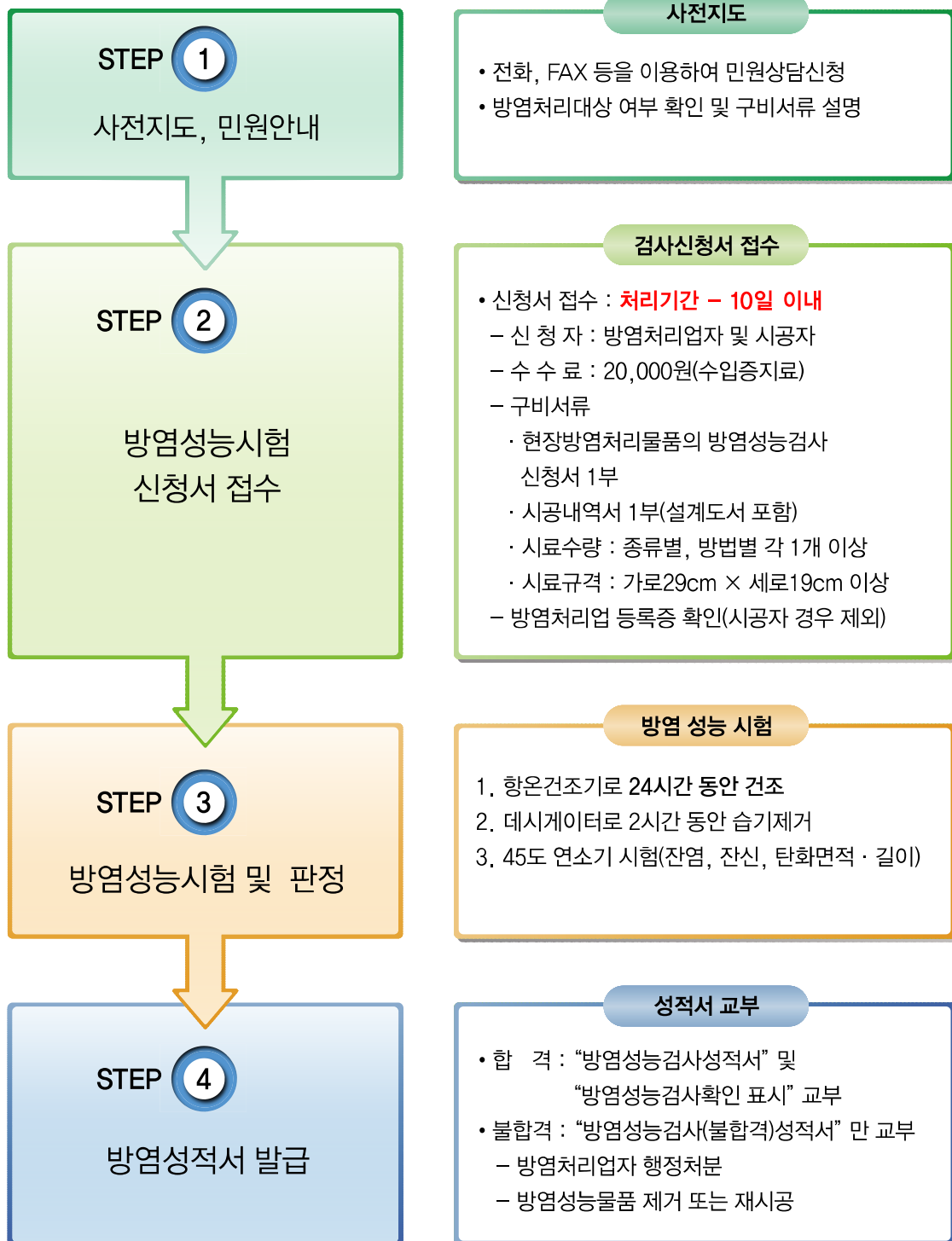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www.kfsa.or.kr





2.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절차





제8장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1.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 개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보완명령 등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조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1) 공개사항

- ① 미 이행 업소의 명칭, 주소
- ②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 ③ 미 이행의 횟수

(2) 공개기간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3) 공개방법 등 : 관보, 신문, 소방서 홈페이지 등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시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교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여 표지를 갱신 교부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공표 함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예시]



제9장

화재배상책임보험

1.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1)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 2)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2.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는지?

- 신규업소 : 2013. 2. 23부터(단, 150㎡ 미만 5개 업종은 2015. 2. 23부터)
- 기존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단, 150㎡ 미만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 150㎡ 미만 5개 업종 : 휴게·일반 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보험금(보험 한도액)



4. 가입의무 제외 대상

- ① 학원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②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휴게음식점업
 - ㉤ 일반음식점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 ④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⑤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⑥ 실내권총사격장



제10장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1. 과태료(200만원 이하)

1) **과태료부과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부과대상

-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 (3)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5)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사람
- (6)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 (7)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 (8)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2. 이행강제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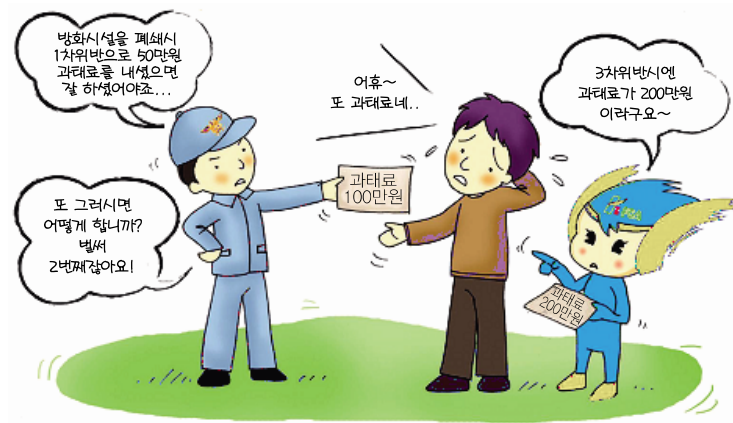
1) 사유 및 대상

조치명령(안전시설등 시정보완명령 등)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초 조치명령일로부터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징수)

2) **부과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1. 소방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		
①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②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③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④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⑤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50	100	200
3.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4.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5.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6.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7.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6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9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200		
8. 보험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0		
9.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200		
10. 보험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00		
1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꼭!

알아두면 유용한 소방관련 상식 Q&A

Q1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A1 소방차출동에 따른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실시와 관련한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시·도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2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A2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Q3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받나요?

A3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 요청시 첨부서류로,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즉시 민원으로 발급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에 따른 민원상담을 위하여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화재피해 복구 안내소를 설치, 운영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Q4 구조구급증명서는 어떻게 교부 받나요?

A4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 제출하는 서류로 주소지 또는 구조·구급발생장소의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즉시 민원으로 발급하며, 다른 시·도간에 연계하여 이송한 환자에 대한 구조구급증명서도 다른 시·도의 소방서 등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교부가 가능합니다.

Q5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화기를 총약 해주나요?

A5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화기를 총약하지 않습니다. 일부 업소에서 소방공무원이나 한국소방안전협회 직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강매 및 총약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PART
02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제1장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 제2장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제3장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한국 소방안전 협회 홈페이지 kfsa.or.kr에서는
각 시설별 점검 동영상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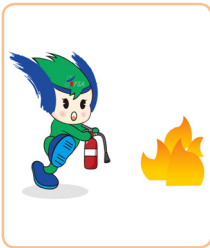


제1장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1.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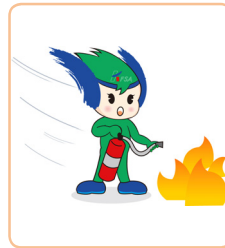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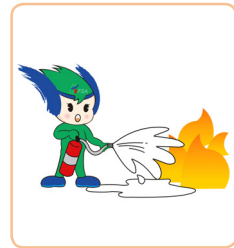
소화기를 불이 난곳으로 옮긴다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방사한다

주요 점검사항

녹색 : 정상



노란색 : 압력미달



월1회 : 흔들어주세요



- (1) 약제가 굳었는지 흔들어 확인
- (2) 쉽게 사용 가능한 위치(바닥에서 1.5m 이하) 및 각 실마다 설치되었는지 확인
- (3) 압력계 지침이 **녹색(0.7~0.98Mpa)**을 가리키면 **정상**, **노란색**이면 **압력미달**, **적색**이면 **과충전**으로 정비가 필요
- (4) 손잡이 및 안전핀, 용기외부가 파손이나 탈락되지 않았는가 확인



2. 옥내소화전

사용 방법



옥내소화전함을 열고 호스와 관창을 꺼낸다.



옥내소화전 밸브를 연다. ▶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림)
※ ON-OFF방식의 경우 스위치를 별도로 작동시킨다.

◀ 연결된 관창과 호스를 화점부근으로 이동한다.
(호스가 꼬이지 않아야 하며 방수시 수압이 세므로 관창을 꼭 잡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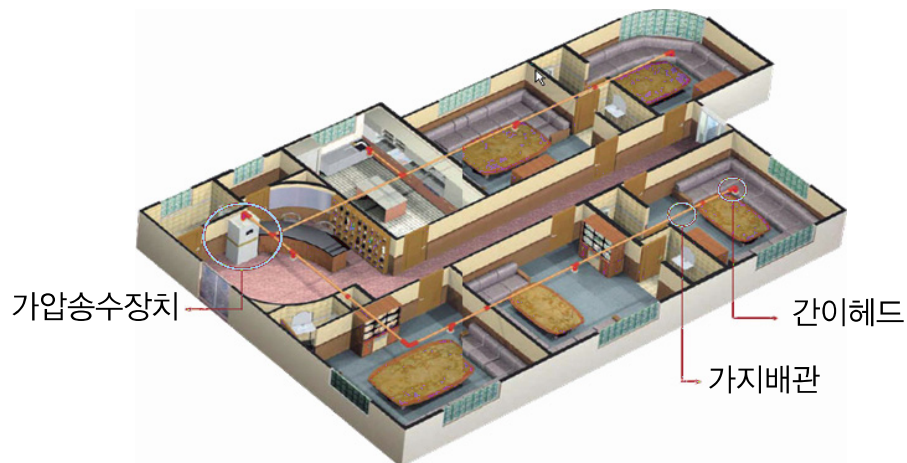


화점에 방수하여 소화한다.

3. 간이스프링클러

주요 점검사항

- (1) 헤드가 누락된 장소는 없는지, 헤드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
- (2) 상수도 급수배관 및 간이스프링클러의 개폐밸브는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
- (3) 시험밸브함에서 시험밸브를 열었을 때 방수압력이 0.1MPa 이상인지 확인
- (4) 상용전원이 상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10분이상 지속되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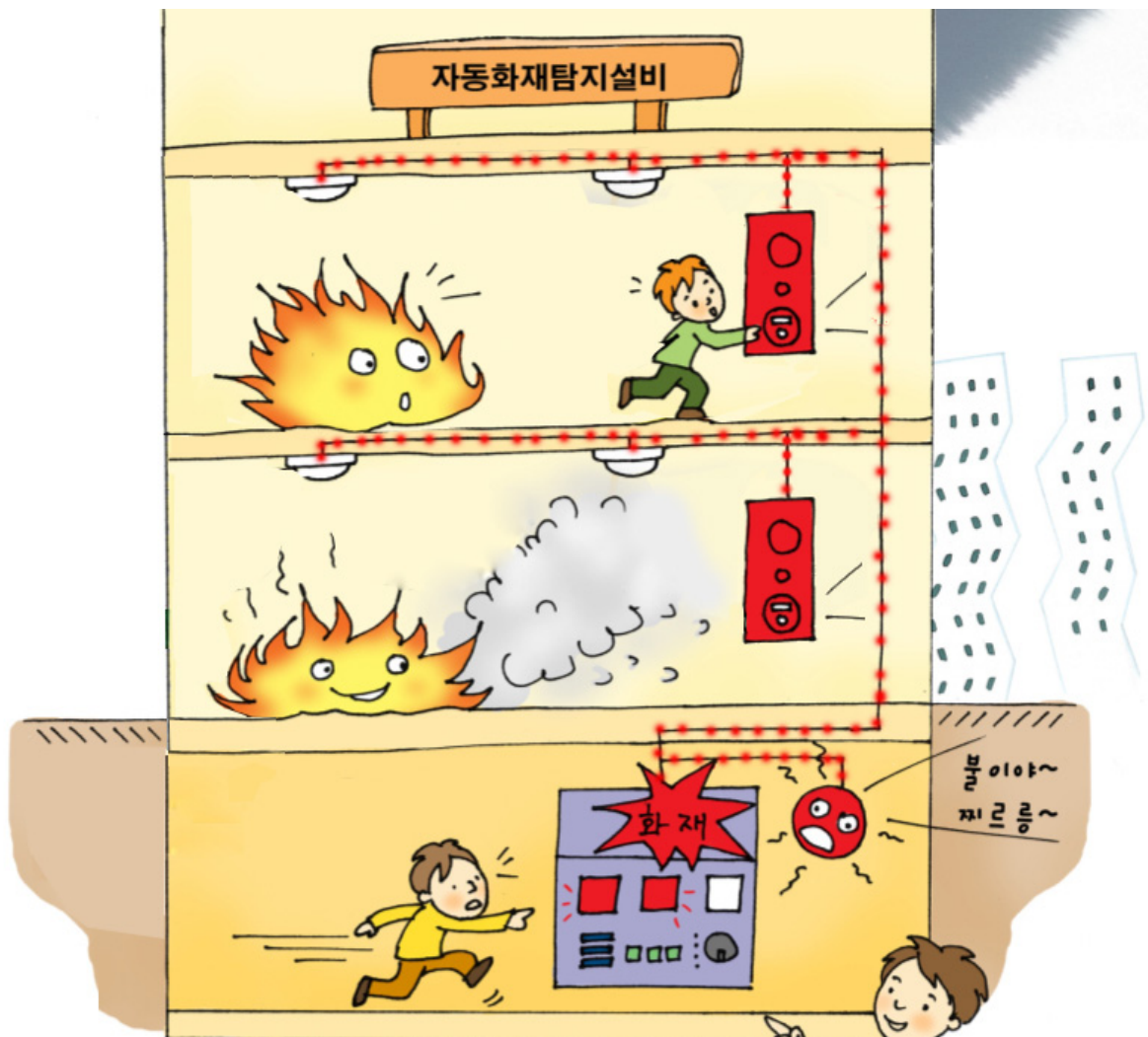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시]



4. 자동화재 탐지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자동감지
 - 화재시 수동으로 발신기 스위치 누름
- ⇒ 경보를 발함으로서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1) 감지기 : 화재시 열·연기·불꽃 등을 자동으로 감지



[열감지기(차동식)]



[열감지기(정온식)]



[연기감지기]

주요 점검사항

- (1) 탈락되거나 훼손된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
- (2)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가 설치 되었는지와 설치가 누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

2) 발신기(비상벨) : 화재시 수동으로 누름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

주요 점검사항

- (1) 평상시 : 위치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음
- (2) 점검시 : 누름버튼을 눌렀을 경우 주경종 및 지구경종이 경보되는지 확인



[발신기]



[화재시 발신기 누름버튼을 힘껏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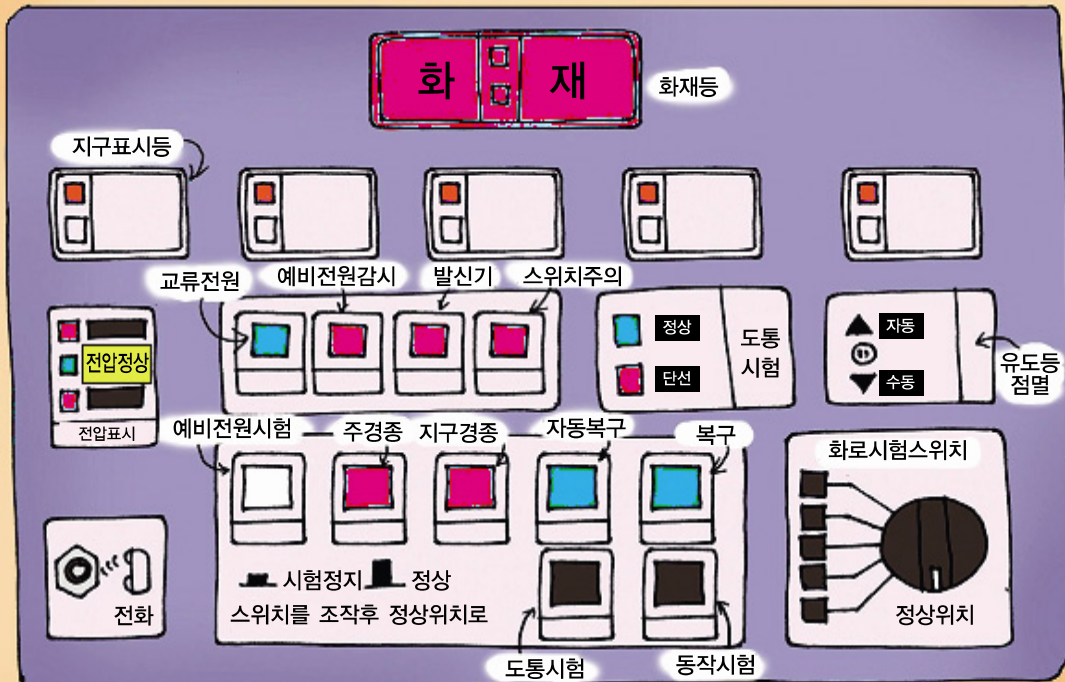
3) 수신기



- (1)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
- (2) 화재발생을 표시하고 각 층의 음향장치로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장치



P형 1급 수신기



Tip

※ 평상시는 전압정상 및 교류전원등만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경종정지 및 시험스위치 등을 눌러 놓으면 스위치주의 표시등이 깜박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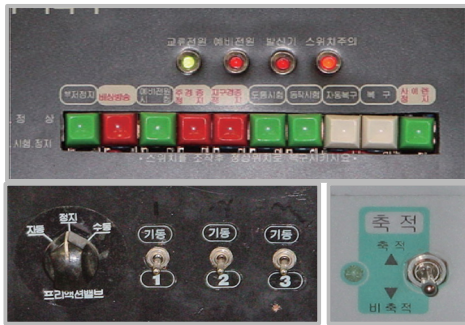


주요 점검사항

(1) 화재표시 동작시험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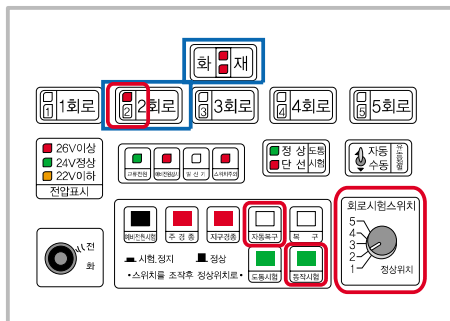
단계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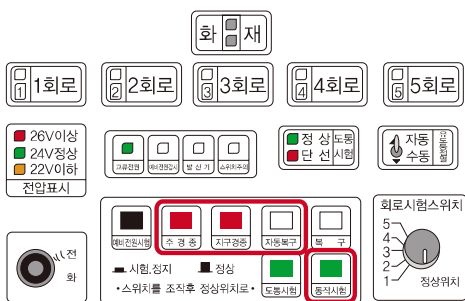
- ① 안전조치를 한다.
 - 가. 주경종, 지구경종, 싸이렌, 방송 등을 정지
 - 나. 연동설비를 정지 (유도등, 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등)
 - 다. 빠른 진행을 위해 오동작방지기를 비촉적으로 전환



- ② 동작시험스위치와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 ③ 회로시험스위치를 1회로씩 선택한다.



- ④ 동작확인을 한다.
 - 가.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확인
 - 나. 주경종, 지구경종, 싸이렌, 방송 등을 해제하여 확인
 - 다. 연동설비를 해제하여 확인



- ⑤ 수신기를 시험전으로 복구시킨다.
 - 가. 동작시험스위치, 자동복구스위치를 다시 눌러 원상태로 복구
 - 나. 주경종, 지구경종, 싸이렌, 방송 등을 다시 눌러 원상태로 복구
 - 다. 회로시험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복구
 - 라. 연동설비를 정상상태로(유도등, 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등) 전환한다.



(2) 회로도통시험

회로별 감지기선로의 단선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단계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 회로시험스위치를 1회로씩 선택한다.
<p>정상 (녹색등 점등) 단선 (적색등 점등)</p>	<p>③ 도통확인을 한다.</p> <p>1) 도통시험 확인등이 있는 수신기</p>
<p>정상인 경우 (4~8V 지시) 단선인 경우 (0V 지시)</p>	<p>2)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p>
<p>④ 수신기를 시험 전으로 복구시킨다.</p> <p>1) 도통시험스위치를 다시 눌러 원상태로 복구</p> <p>2) 회로선택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복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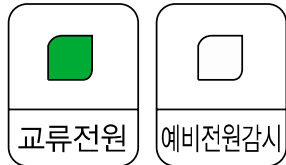




(3) 예비전원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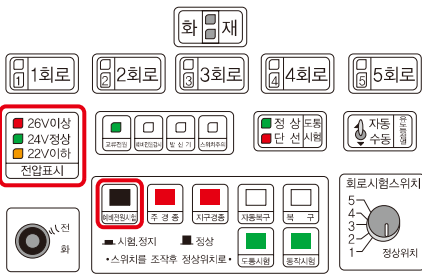
화재 등으로 정전 또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수신기가 정상 동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단계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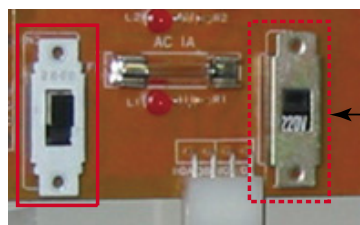


① 교류전원등(점등상태)과 예비전원감시등(소등상태)을 확인

※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상태이면 예비전원 불량임



②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누르고 있는 동안만 시험 가능)



110V/220V 절환스위치

③ 예비전원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가. 자동절환여부 : 상용전원 입력을 차단한 후 작동상황 확인



나. 예비전원 전압(24V)의 적정여부



5. 유도등 :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주요 점검사항



[예비전원 점검스위치]



[예비전원 점검버튼]

- (1) 점등상태 확인
항시 점등되고 있는지 확인
- (2) 예비전원 자동전환 확인
점검스위치를 당기거나 눌렀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 전환 되는지 확인
- (3) 외관 및 배선상태 확인
유도등 외관에 파손여부 확인 및 노출배선이 금속가공 전선관인지 확인

6. 휴대용 비상조명등



주요 점검사항

- (1) 분실되거나 본체에서 탈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 (2) 본체에서 떼었을 시 자동으로 켜지는지 확인

7. 완강기

화재시 복도·계단등으로 피난 불가시 창문 등을 통해 바로지상으로 탈출하는 피난기구



사용 방법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창 밖으로 줄을 놓는다.
(로프 길이 적정인지 확인)



벨트를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고 조절링을 이용해 확실히 조인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다.



두손으로 로프2개를 잡고 발부터 창밖으로 내민다.



몸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을 가볍게 손으로 밀면서 내려온다.

주요점검 사항



- (1) 완강기 주위에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2) 고정지지대가 바닥과 벽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 (3) 설치 층의 높이와 설치된 완강기 로프길이가 일치하는지 확인
- (4) 설치장소에 완강기 사용시 장애요인은 없는지 확인

완강기 사용시 주의사항

- ① 두 팔을 위로 들지 말 것
 - 하강중 두 팔을 위로 올리면 벨트가 빠져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② 사용 전 지지대를 흔들어 볼 것
 - 사용전에 지지대를 흔들어 보셔서 흔들린다면 절대 타지 마세요.



제2장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화재시 피난하는데 사용하는 계단, 비상구 등과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화문, 방화벽 등으로서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등을 말한다.

주요점검 사항

1) 방화문

- (1) 방화문 설치 장소에 다른 문으로 교체는 없었는가?
- (2) 도어체크 기능은 정상인가?
- (3) 고임장치 등으로 방화문 작동에 지장은 없는가?
- (4)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가?

2) 방화셔터

- (1) 방화셔터와 감지기의 연동은 정상적인가?
- (2)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부근에 장애물은 없는가?

3) 복도 및 계단

- (1)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 (2) 타용도로 겸용하여 사용하지는 않는가?
- (3) 기타 피난이나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은 없는가?

4) 기 타

- (1) 비상구 또는 비상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가?
- (2) 기타 피난계단, 내부마감, 방화구획 등 건축법상 피난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지되고 있는가?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2010년부터 소방대상물에 아래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물품 등을 지급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신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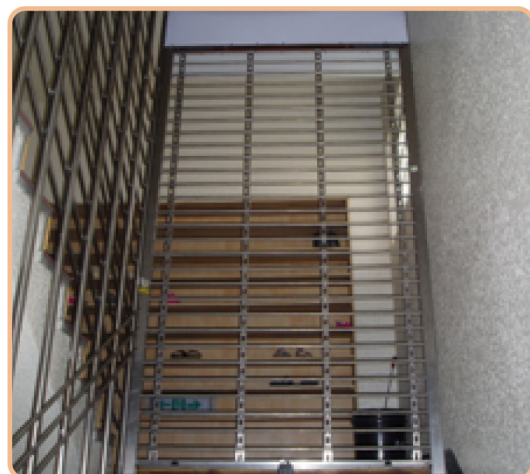
- 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②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1)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 (1) 화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등 설치
- (3)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
- (4) 용접, 조적, 쇠파스,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을 막는 것
- (5) 기타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물 비치 및 방범셔터 설치로 피난구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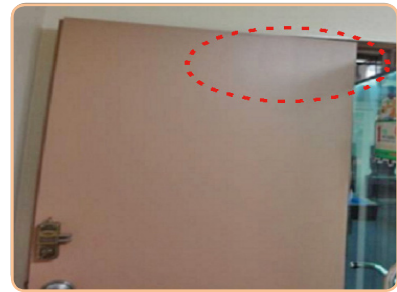


2)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1) • 방화문을 철거·제거
 -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
 -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 (2) 배연설비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
- (3)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제거



3)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1) 방화구획·내부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
- (2)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3) 건축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방화문
철거 후
유리문 설치



4) 피난·방화시설 등의 장애유발 행위

- (1) 계단·복도(통로)·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의 설치
- (2) 고정식 잠금장치는 아니나 계단·복도에 철책(문)등 설치
- (3)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장애물 설치
- (4)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 초래



방화셔터·계단
장애물 설치





제3장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1.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3. 점검자의 자격

점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1년에 4회)
점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상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용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점검표 비치 적정 여부 ②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처리 상태 적정성 ③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 적정 및 기능 점검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정성 ⑤ 피난설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 기능 점검 ⑥ 경보설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기능 점검 - 경보설비의 각실 설치 여부 ⑦ 방화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문 성능의 적합성(시험성적서, 열림구조, 기밀도등) - 비상구(비상탈출구)의 구조 적합성(크기, 위치, 피난 용이성 등)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기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작동 방법등 ⑨ 누전차단기의 기능 점검 ⑩ 피난 유도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기능 점검 ⑪ 화기취급장소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⑫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 및 포함 내용 - 피난영상물의 상영 시기 및 포함 내용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작성 예시)

1. 점검대상

대상명	질러노래방	전화번호	02-000-1004		
소재지	영등포구 영등포동 100번지, 2층	주용도	노래연습장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표자	홍길동	소방안전 관리자	임겨정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안전점검표 비치 적정 여부	- 점검표 분기별 보관함	
②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처리 상태 적정성	- 방염물품 변경, 훼손없음	
③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 적정 및 기능 점검	- 소화기압력상태 미달	소화기 교체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정성	- 스킴클러 변경없음	
⑤ 피난설비 적정성 -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등 기능 점검	- 유도등, 휴대용조명등 양호, 원강기설치상태 양호함	
⑥ 정보설비의 적정성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기능 점검 - 정보설비의 각실 설치 여부	- 비상벨 소리 양호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됨 - 각실 비상벨 변경없음	
⑦ 방화시설의 적정성 - 방화문 성능의 적합성(시험성적서, 열림 구조, 기밀도등) - 비상구(비상탈출구)의 구조 적합성(크기, 위치, 피난 용이성 등)	- 도어체크 정상 - 비상구 및 통로에 장애물 없음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기능 점검 - 위치, 작동 방법등	- 비상벨 작동시 영상음향 차단됨	
⑨ 누전차단기의 기능 점검	- 전기업체에서 점검받음	
⑩ 피난 유도선 확인 -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기능 점검	- 피난유도선 점등 양호	
⑪ 화기취급장소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 화기취급 안함	
⑫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 -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 및 포함 내용 - 피난영상물의 상영 시기 및 포함 내용	- 피난안내도 각실부착함 - 손님 바뀔 때 마다 영상물 상영함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PART
03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제1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제2장 만화로 보는 화재 예방

제3장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제1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1. 공통 준수사항

- 영업의 개시와 동시에 비상구 개방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금지
- 안전시설등의 작동여부 확인 및 고장시설은 즉시 정비
- 이용객에 대하여 비상구 위치 등 내부구조 숙지토록 조치
- 종업원 등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및 화재시 대처요령 숙지
- 문어발식 배선 사용금지 및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사용금지
- 전기시설 정기점검 철저(차단기 작동상태 및 누전여부 등)
- 영업장 또는 주변 인화성·가연물품 방치여부 등 확인
 -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불씨가 있나 없나 확인
 - 업소 내 구석진 곳과 계단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정리정돈 철저
- 이동식석유난로 사용금지
- 인테리어 변경 및 구조변경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시공
- 쇼파·의자 및 가구류는 가급적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

2. 업종별 준수사항

1)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 **이용자들이 대부분 취객인점을 감안하여 피난동선 반드시 확보**
- 화재시 다량의 연기발생으로 패닉현상 발생 대비 ⇨ 인명대피요령 숙지
- 음악 및 노래소리로 화재인지도 늦음 ⇨ 인명대피방안 강구
- 룸별 영상모니터 초기화면에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쇼파, 의자는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

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업소 내 불필요한 화기취급시설 사용자제
- 전기·가스시설 매월 정기점검 실시
- **주방 및 보일러실(가스시설 취급) 등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금속배관 사용**
- 가스 사용시 호스가 낡거나 손상된 것은 즉시 새것으로 교체
- 영업종료 후 가스시설 밸브 잠금 상태 확인



3) 비디오감상실·비디오소극장

- 룸별 영상모니터 초기화면에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구획실(룸) 내 흡연 등 행위 금지
- 인화성물질 반입 금지
- 영업장 내 숙직행위 금지 및 불필요한 화기취급시설 사용 자제

4) 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장 내 숙식 및 취사행위 금지
- 누전차단기 주기적인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 영업장 내 흡연구역 수시확인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 사용 금지

5) 산후조리원

- 주방 및 보일러실 등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금속배관 사용
- 비상구 향시 개방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금지
- 신생아의 감염문제 등으로 피난계단 내 장애물 설치 금지
- 화재발생시 산모 및 신생아의 우선적인 대피방안 등 강구

6) 고시원·수면방

- 비상구 위치, 피난설비 등 피난안내도 객실별 부착
- 구획실(룸) 내 흡연 및 취사행위 등 화기취급 금지
- 각종 전기용품 사용으로 과부하 등 전기화재 발생요인 사전제거
- 전기담요 및 비닐전선 사용 금지
- 종업원(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 ⇨ 평상시(비상시) 조치사항
- 불법 증·개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금지
- 침구류는 가급적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

7) 전화방·화상대화방

- 구획실(룸) 내 흡연 등 행위 금지
- 룸별 영상모니터 초기화면에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영업장 내 숙직행위 금지 및 불필요한 화기 취급시설 사용 자제



8) 학원

- 강의실 별 피난안내도 비치
- 화재발생시 학원생의 분산대피 방안 강구
- 관계자 정기적인 대처요령 확인 및 훈련실시
- 내부복도 등 피난경로가 협소하고 미로형 구조로 피난동선 반드시 확보

9) 목욕탕(찜질방)

-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방화문 폐쇄 또는 변경행위 금지
- 주방, 숲체험장, 황토방, 불가마 등 취약요인에 화재위험요소 사전제거
- 불법 증·개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금지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이용객 분산 대피유도방법 등 안전방안 강구

10) 영화상영관

- 각 상영관마다 피난동선 별개 확보 및 안전요원 배치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관람객 분산 대피유도방법 등 안전방안 강구
- 심야 상영시간대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 폐쇄 금지
- 심야 상영시간대 상영관별 안전요원 배치
- 비상엘리베이터 수시 작동여부 확인
-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초기대응방법 수시교육
- 영화상영전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인명구조용 기구(공기호흡기) 압력상태 수시확인 및 사용법 수식교육
- 관계자 정기적 안전교육 및 가상훈련 실시

11) 클라텍·권총사격장·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각종 전기시설 과다사용으로 전기 과부하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
- 영업장 내 안전요원 배치하여 위험요인 사전제거
- 흡연구역 설정 및 영업종료시 재떨이와 휴지통은 반드시 비울 것
- 불필요한 화기취급시설 사용 금지
- 불법 증·개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금지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수칙

1) 평상시

- 종업원들에게 영업장의 구조와 건물현황 알려주기(비상구 위치 등)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초기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 화재시 행동요령(119신고 및 전파, 피난유도 방법 등) 알아두기
- 건물의 위치와 화재신고방법 연습(주소, 업소명, 화재종류 등)

2) 영업시작 전 해야 할 일

- 영업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 비상구를 항상 개방(피난상 장애가 없는지 확인)
-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수시 점검(소화기, 수신기, 비상벨, 유도등)
- 불필요한 가연물과 위험물이 방치여부 확인

3) 영업 중에 해야 할 일

- 위험요소는 없는지 수시 확인
-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
- 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비상구 위치안내

4) 영업을 마치면

- 일일 방화점검표의 확인사항 체크
- 영업장에서 숙식 절대금지



제2장

만화로 보는 화재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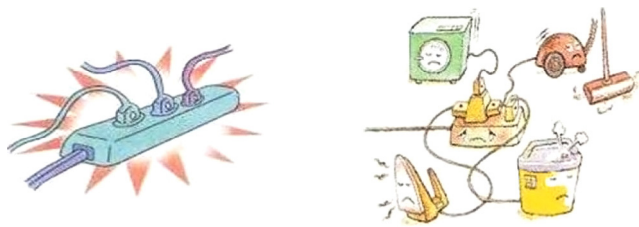
1. 전기화재 예방요령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꼽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빼둔다.
- 과전류 차단장치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동작유무를 확인한다.



1) 콘센트 용량초과 방지

문어발 배선 등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해 전선이 맞붙어 아크와 함께 고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



2) 규격전선 사용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비닐전선을 용량초과 사용시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규격전선을 사용한다.

●●● 전기안전 3대 수칙만 지켜도 90% 전기화재 예방 가능

- ① 불법시설의 금지 및 임의 시설공사시 안전시공
- ②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사용 금지(전열기 등 동시 사용제한)
- ③ 누전차단기 주기적인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2. 가스화재 예방



▶ **사용전/환기**
 가스불은 켜기 전 가스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환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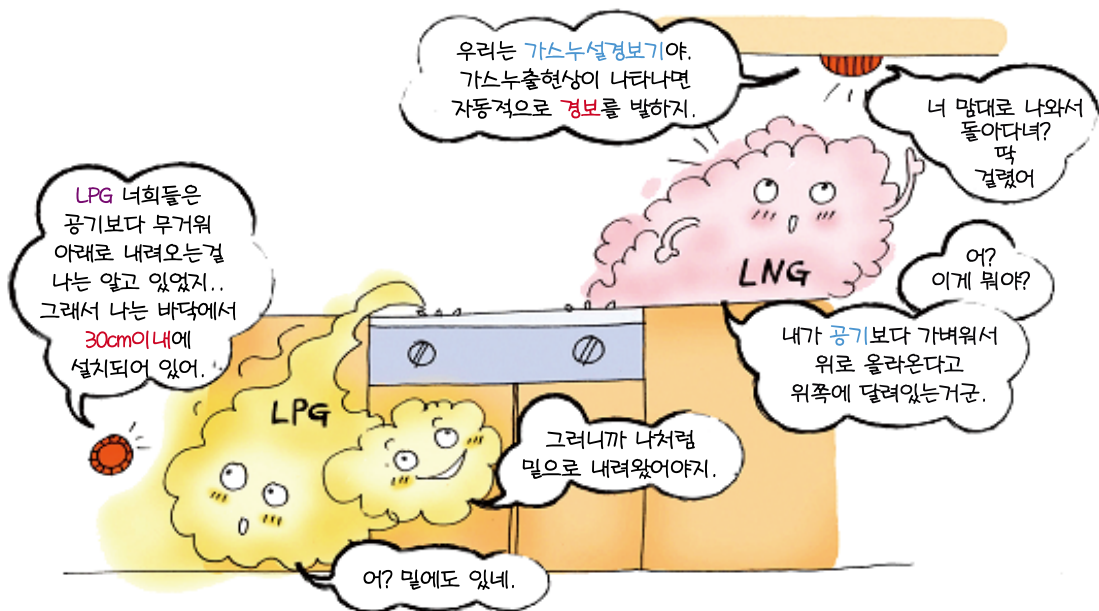
▶ **사용중/점화확인**
 가스를 켤 때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불이 붙지 않은 줄도 모르고 콕크를 계속 열어두면 가스가 새어 위험합니다.



▶ **사용후/밸브잠금**
 점화콕크와 중간밸브를 잠근다.
 ※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둘 때는 중간밸브나 계량기 밸브까지 잠가야 안전합니다.



▶ **평상시/누출점검**
 호스와 연소기 등 이음새에 비눗물 등으로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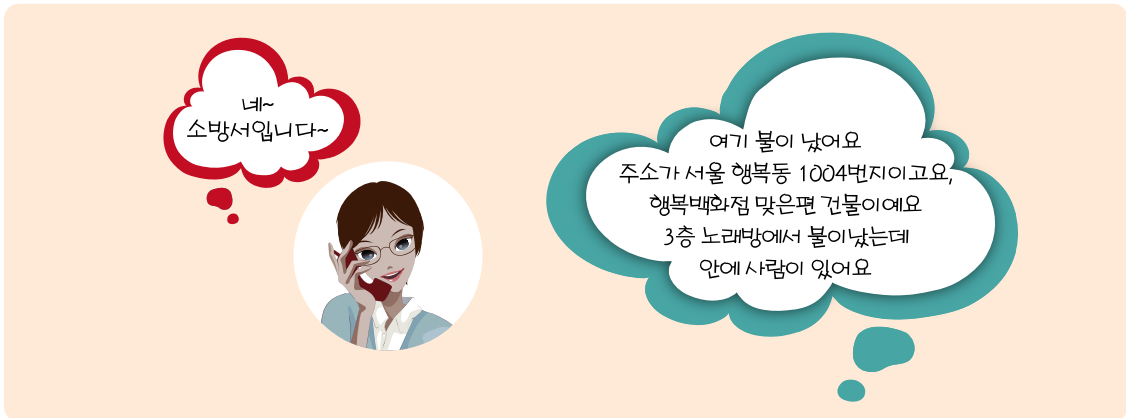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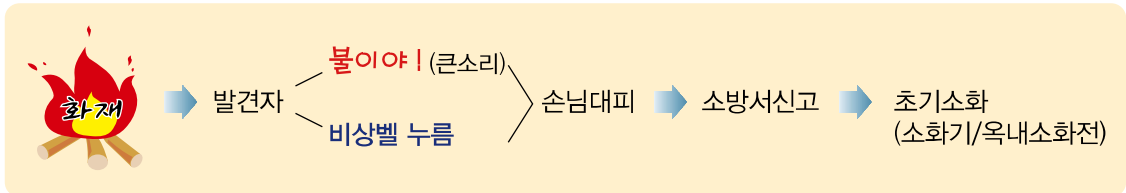




제3장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순서



※ 화재신고를 할 때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2.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1) 피난유도

- (1)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구조를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 (2) 안내원의 지시 또는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해야 한다.





2) 대피요령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1) 문에 손을 대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뜨거울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2)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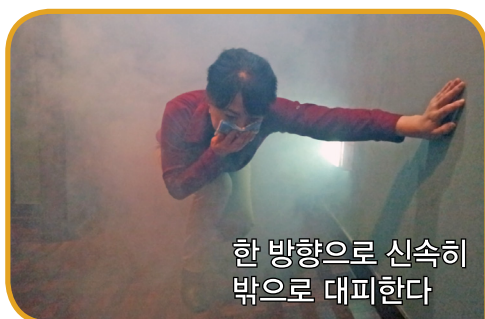
(3) 엘리베이터는 통로가 굴뚝역할을 하고 간히어 질식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손수건·옷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자세를 낮춘다



한 방향으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화재발생 시 대피자세]



3)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불길이나 연기로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보다는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 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PART
0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제1장 응급처치의 개요

제2장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사용



제1장

응급처치의 개요

1. 응급처치의 정의 및 목적

- 1) **응급처치란** : 사고나 질병 또는 재해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 전에 실시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적절한 조치
- 2) **응급처치의 목적** :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태 악화를 방지하여 고통 경감 및 차후 전문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있다.

2. 응급처치의 기본사항

1) 환자의 의식, 호흡 상태 파악

- (1) 환자를 수평으로 눕혀 놓고 의식, 호흡, 맥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의식을 잃으면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3) 의식이 없어 호흡을 할 때나, 인공호흡으로 호흡이 돌아오면 토하거나 구강에 분비물이 많아지므로 얼굴을 옆으로 하여 비스듬한 자세를 취해주어 구토물이 잘 배출되도록 한다.

2) 환자의 출혈 상태 파악 및 지혈

환자의 출혈 정도를 살펴서 출혈량이 과도할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과다 출혈을 방지한다.

3) 환자의 손상 부위를 파악할 것

- (1) 응급처치의 개요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물어보아야 한다.
- (2)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육안으로 관찰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는 충분히 노출시켜 상처의 범위를 확인한다.

4)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부상시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를 실시 하더라도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경찰, 병원 등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것

- (1) 응급처치 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사람이 처치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 (2) 구조 요청 시 사고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2장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사용

1. 심폐소생술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회복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보내주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Compression) → 기도유지(Airway) → 인공호흡(Breathing)의 C → A → B 순서이다.

1)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1) 심정지 확인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등의 말을 하여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빡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여 심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무반응, 비정상 호흡은 심정지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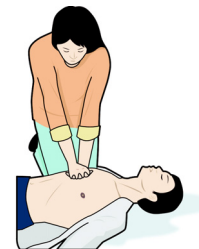
(2) 주변의 도움요청 및 119 신고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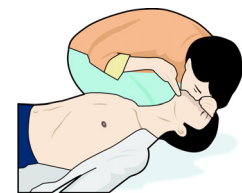
(3) 가슴압박 30회 시행

가슴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4) 인공호흡 2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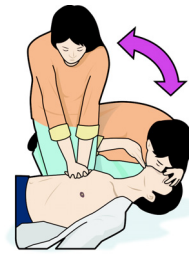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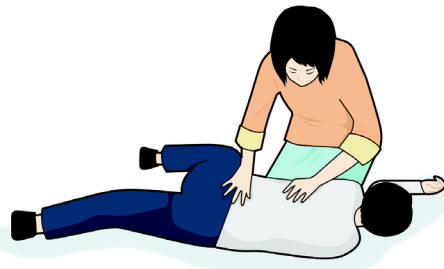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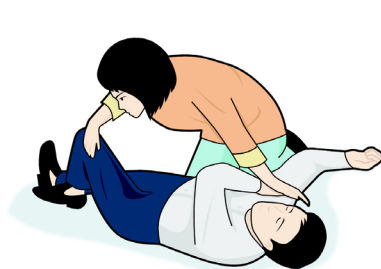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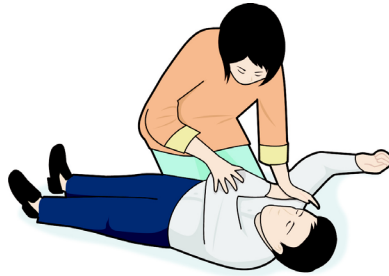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6) 회복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며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만약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심장수호 7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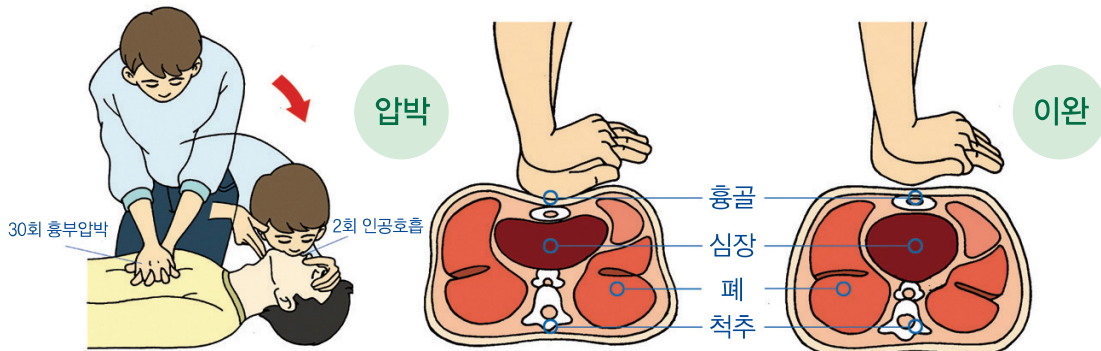
- 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 ② 담배는 반드시 끊고 음주 횟수를 줄이자. (음주시 2~3잔 이내).
- ③ 짜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라.
- ④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즐기자.
- ⑤ 평소 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관리하자
- ⑥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전조증상이 의심되면 재빨리 병원을 찾자.
- ⑦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라.

※ 소방방재청 등의 응급상황 대처방법 어플리케이션이나 동영상을 미리 설치하여 응급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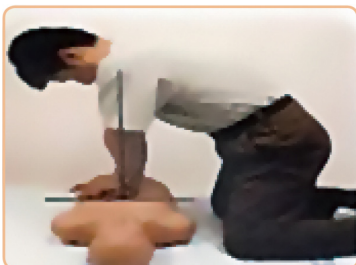
2) 흉부압박법

- (1) 흉부압박 위치는 양측 유두연결선 중앙으로 한다.
- (2) 손과 어깨는 일직선을 유지하고 환자의 가슴과 90°를 유지, 이때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한다.
- (3) 압박깊이는 성인의 경우 5~6cm가 적당하며 압박깊이가 적당한지는 1인의 경우 깊이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2인의 경우 한 처치자가 흉부압박을 하는 동안 다른 처치자가 경동맥을 촉지함으로써 알 수 있다.
- (4) 흉부를 압박후에는 흉벽이 정상위치로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이때 흉골로부터 손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분히 떼어준다.
- (5) 손가락은 각지를 끼워 손꿈치 만 흉부에 닿도록 한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

압박의 깊이는 5~6cm로 하고
속도는 100~120회/1분



[성인]



[소아]



[유아]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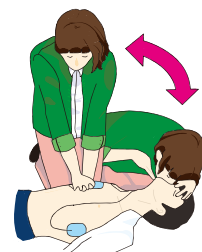


[자동제세동기 설치모습]



[자동제세동기 예시]

- 1) 전원을 켜다.
 - 2)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패드를 부착한다. 한쪽은 우측 쇄골의 바로 아래쪽에 부착하며, 다른 한 쪽은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한다. 각 패드의 표면에 부착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한다.
 - 3) 패드를 부착하면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분석중에는 환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 4) 기계의 분석이 끝난 이후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충전 이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 주변 사람 및 구조자가 기계와의 접촉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 5) 제세동이 필요 없거나 제세동을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6) 기계는 자동으로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기계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 ※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및 기계의 표면에 사용법이 적혀 있으므로 사용시에 참고한다.





첨부

화재사례로 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

1. 부산 「○○ 노래주점」 화재사례 분석

사망 9명, 부상 5명, 연기흡입 13명, 재산피해 8,000만원

1) 화재 발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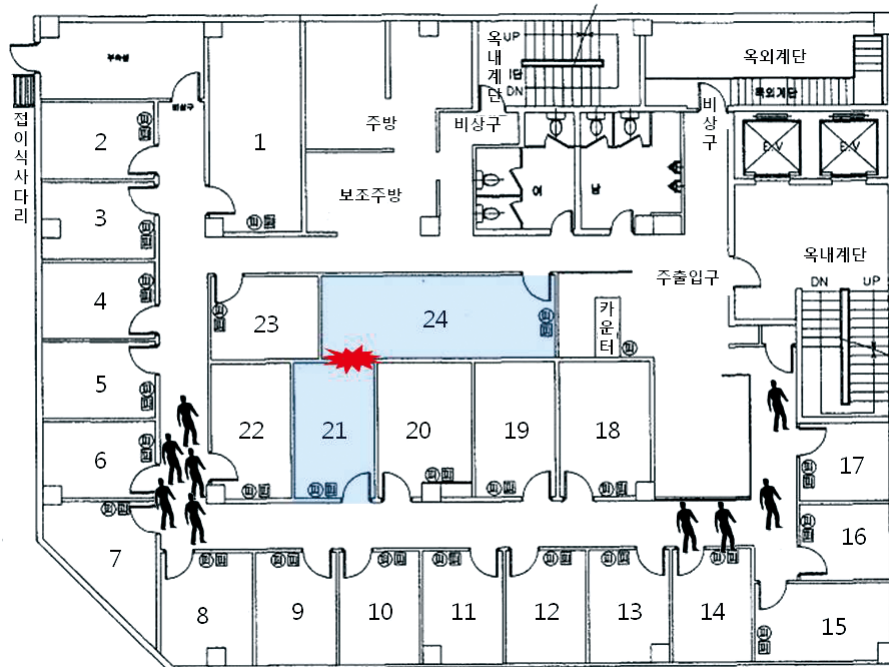
- 일 시 : 2012년 5월 5일 20:52 ~ 22:02(70분 소요)
- 장 소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상 3층
- 원 인 : 룸 천장 위쪽에 설치된 전선에서 화재 발생
- 인명구조 : 27명(건물내부 10명, 옥상층 17명)



[노래주점 전경]



[화재 현장 사진 : 3층]



[사망자 발견위치]



2) 소방시설 현황

- 노래주점 : 비상구 3, 영상음향차단 1, 피난기구 1, 비상벨 29, 휴대비상조명등 29

3) 출동현황 : 소방 311명 · 경찰 150명 출동

4) 다수 인명피해발생 원인

✓ 초기진화 실패와 대피지연

- ① 화재가 빈룸에서 시작되어 초기에 알지 못함
- ② 화재발생 사실을 손님에게 즉시 전파하지 않음
- ③ 영업주와 종업원이 초기진화 실패

✓ 소방시설 미작동과 교육 미이수

- ① 경보설비(비상벨)와 영상음향차단장치 미 작동
- ② 종업원들이 소방교육을 받지 않아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지 못함

✓ 비상통로 차단

- ① 출입구 옆 룸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주 출입구와 가까운 비상구는 불꽃과 연기로 차단
- ② 주 출입구 맞은편 비상구 불법 개조로 피난역할 못함



[현장 외부사진]



5) 화재 사례를 통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사항

(1) 영업주와 종업원 안전의식 결여

- ① 화재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만 밖으로 대피
- ② 비상구를 불법 개조해 릉으로 사용
- ③ 옥내소화전 및 비상구 부근에 주류박스 등 장애물 설치

⇒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강화, 화재 시 손님 대피 의무 신설

(2) 릉 칸막이 등 설치기준 미비

- ① 각 릉 칸막이 구획 기준 미비
- ② 반자 속에 합판, 가연물 등 설치 시 별도의 제재 규정 미비

⇒ 영업장 내부 구획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정 속 구획 등 설치기준 신설

(3) 창이 없는 밀폐구조로 질식

⇒ 밀폐구조의 다주이용업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4) 음주로 피난 통로를 찾지 못함

- ⇒ 영업장내 피난통로 기준 신설
- ⇒ 피난통로에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
-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변경, 훼손시 과태료 부과 신설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



[○○호프집 화재(인천 중구) : 1999.10.30 / 사망 56명 / 부상 81명]

- ① 지하 노래방 불장난이 2층 호프집으로 확산
- ② 비상구가 없고 출입구 폐쇄



[○○유흥주점 화재(전북 군산) : 2002.1.29 / 사망 15명]

- ① 합판·스티로폼의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유독가스 확산
- ② 비상구 폐쇄



[○○월드찜질방 폭발사고(대구 수성) : 2005.9.2 / 사망 5명 / 부상 48명]

- ① 지하 보일러실에 유증기 누출
- ② 점화원에 의해 유증기 폭발



[○○고시원 화재(서울 송파) : 2006.7.19 / 사망 8명 / 부상 9명]

- ①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발생
- ② 고시원으로 유독가스 확산



[안산 ○○성인오락실 화재(안산 단원구) : 2007.12.26 / 사망 5명 / 부상 2명]

- ① 불법 영업을 감추기 위해 철문 설치
- ② 용접 불티로 화재 발생 및 확산



[용인 ○○고시텔(용인시 처인구) : 2008.7.25 / 사망 7명 / 부상 11명]

- ① 방화로 인한 화재 확산
- ② 비상벨 미작동 및 창문 폐쇄



[부산○○사격장 화재(부산 신창동) : 2009.11.14 / 사망 15명 / 부상 1명]

- ① 사격시 불꽃 발생
- ② 흡음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적 확산



[○○노래주점 화재(부산) : 2012.5.5. 사망 9명]

- ① 천정안 전선에서 발화
- ②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화재 확대 및 미로구조

※ 매년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이 목숨을 잃음

참고문헌

- 소방방재청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2009
 - 부산○○노래주점 화재 관련 자료 2012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 부산○○노래주점 화재 관련 자료 2012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재 2012
- 한국소방안전협회
 - 다중이용업소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강습교재 2012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재 2012
 - 사례를 통한 다중이용업의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소방안전 제25호(2007)
 -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대책 소방안전 통권 137호(2005.봄)
 -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숙지해야 할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요령 소방안전 통권 137호(2005.봄)
 -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사례 소방안전 통권 137호(2005.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우수업체 인정제도 소방안전 통권 156호(2009.겨울)
 -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대책 소방안전 통권 166호(2012.여름)
- 대한심폐소생협회(www.kacpr.org)
 - 2011년 한국심폐소생술 지침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 안전관리 Guide Book

발행일 : 2013년 3월 초판1쇄
발행처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재개발과
편집디자인 및 인쇄 : 성림기획

